

의안번호	2202425
의 퇴 인	이해석의원
회 답 일	2024. 8. 20.
추계번호	24C2561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22조제1항 제11호의2(기금의 사용 등)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사용 용도에 "노인 맞춤형 체육활동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비용 및 시설 지원"을 추가함	의무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22조제1항 제11호의2(기금의 사용 등)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기금의 사용 등(안 제22조제1항제11호의2)

- 현행법은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사용 용도로 국민체육 진흥을 위한 연구·개발 및 그 보급 사업, 국민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지원 사업, 선수와 체육지도자 양성을 위한 사업, 저소득층의 체육 활동 지원,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한 지원 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음
- 개정안은 노인 체육 활성화 도모를 위해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사용 용도에 ‘노인의 맞춤형 체육활동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비용 및 시설 지원’을 명확

히 규정하는 내용임

- 현재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어르신 생활체육 종목보급, 어르신 생활체육교실 운영, 어르신 생활체육 지도자 활동 지원, 시·도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지원 등의 노인 체육 활동 지원 사업이 실시되고 있음

[표] 국민체육진흥기금의 노인 체육 활동 지원 사업 현황(2024년)

구분	사업내용	예산액(백만원)
어르신 생활체육 종목보급	어르신 생활체육 관련 17개 종목 보급	2,000
어르신 생활체육교실 운영	어르신 생활체육교실 130개소 지원	400
어르신 생활체육 지도자 활동 지원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1,202명에 대한 활동비 지원	18,809
시·도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지원	17개 시·도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개최 지원	382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 개정안에 따라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사용 용도에 ‘노인의 맞춤형 체육활동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비용 및 시설 지원’이 명확히 규정되고, 이에 따라 노인 체육활동 및 관련 시설 지원 사업이 확대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다만, 개정안은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어 향후 확대될 지원 사업 범위 및 규모 등에 관한 정보를 현 시점에서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기 곤란함

Ⅲ. 부대의견

□ 없음

I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사회비용추계과	이제정	이진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이제정	02-6788-3739	jejeong2@assembly.go.kr